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직원의 배치 권한을 관할청으로 변경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00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 대 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교직원의 배치 권한을 관할청으로 변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8.

3. 회부연월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Ⅲ. 검토의견

□ 교직원의 배치 권한을 관할청으로 변경

개정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제18조¹⁾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u>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현행법 제20조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고, 교원 외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유치원에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하되,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직원의 배치기준은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비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2. (생략)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생략)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u>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원”이라 한다)의 <u>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u>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u>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u>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u>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u>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u>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u>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u>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u>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u> ② <u>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u>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③ (생략)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다양한

교원 수요, 인구 구조 변화 및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적인 책무를 담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2024. 4월기준 직위별 교원수, 단위: 명)

구분	합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 교사	보직 교사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간체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사서 교사
유치원	55,404	3,518	2,056	17	3,005	36,844	1,243	89	185	8,447	-	-
초등학교	196,598	6,136	6,282	440	40,970	108,838	6,047	5,139	4,448	15,832	1,731	735
중학교	114,780	3,011	2,731	275	26,487	49,478	2,432	2,300	1,002	25,080	1,581	403
고등학교	129,436	2,350	2,192	166	25,924	61,342	1,878	1,828	1,169	30,886	1,147	553

자료: 교육부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원장·원감의 학급담당기준, 원감 미배치 허용기준, 학급담임교사·방과후 과정 담당교사·보직교사 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같이 학급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초중등 교과전담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 놀이중심·유아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영유아 교육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사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음.

참고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직원의 배치기준은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²⁾ 및 「학교급식법」 제7조³⁾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시·도 및 유치원 운영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직원의 종류와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모두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반영한 교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학령인구 변동,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 필요성 등으로 시·도 및 유치원 현장에서는 영역 전담교사, 보조·대체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유치원도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초·중등학교와 같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육부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적인 책무를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3)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은 공무원 정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정원’과 ‘배치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동일한 결정주체가 국가공무원 정원을 일관적·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면서 ‘배치기준’만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할 경우, ‘정원 결정주체’와 ‘배치기준의 결정주체’가 달라지므로 공무원 정원관리 혼선 및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